

# 총괄 CEO 후보 추천위원회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7 조의2 및 이사회 규정 제12 조의 규정에 따라 총괄CEO 후보 추천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구성)

- ①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과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인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선임한다.
- ④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 조(역할 및 권한)

- ① 위원회는 총괄CEO 후보 선발기준을 수립하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전문지식, 업무경험, 리더십, 소통능력, 도덕성 등의 자격요건 및 필요 역량을 갖춘 총괄CEO 후보를 심사·선정·추천하는 역할과 회사 경영의 연속성 및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경영승계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위원회는 총괄CEO 후보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회사 및 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회사 및 계열회사와 거래가 있는 경우 회사 또는 해당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거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검증하고, 동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 4 조(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5 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총괄 CEO 자격요건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총괄 CEO 후보의 추천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총괄 CEO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총괄 CEO 경영승계계획 수립, 후보군 관리 및 자격요건 검증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괄 CEO 후보 추천 및 경영승계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 1 항 제 4 호의 후보군 관리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6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당해 위원은 출석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7 조(추천절차)**

① 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총괄 CEO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총괄 CEO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하는 전문지식, 업무경험, 리더십, 소통능력, 도덕성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총괄 CEO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총괄 CEO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한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총괄CEO 후보 추천을 위한 세부 추천절차를 정할 수 있다.

#### **제 8 조(총괄CEO 후보 인선 자문단 운영)**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CEO 후보 인선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총괄CEO 후보의 모집·조사·검증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 9 조(관계인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부 또는 외부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 10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 11 조(실무주관부서 및 간사)**

① 위원회에 관련된 실무의 주관부서는 회사의 이사회지원 담당부서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사의 이사회지원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사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 12 조 (경비)**

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 **제 13 조(공시)**

회사는 총괄CEO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전에 총괄CEO 후보 추천 공시를 하여야 한다.

#### **제 14 조 (규정의 개정 등)**

①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10. 24. 부터 시행한다.